

인천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20156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지

담당변호사 강구현

피 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철

변 론 종 결 2024. 10. 30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7.

주 문

- 망 B과 D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9. 21.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3. 9. 21. 접수 제3410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의 D에 대한 채권

1) (주)E와 (주)E의 대표이사인 D은 2019. 12. 11. (주)F에 화성시 G 임야 3,306㎡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도급주었고, (주)F은 2020. 1. 21. 원고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주었다. 원고는 2020. 2. 15.경까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토목공사를 실행하였다.

2) 원고는 D과 (주)E에 대하여, 원고의 (주)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(주)F의 (주)E,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5269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 위 법원은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를 받아들여 2023. 10. 11. ‘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5. 3.부터 2023. 10. 11.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위 판결에 대하여 D과 (주)E가 항소하였으나, 2024. 10. 23.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D의 재산 처분

1) D은 2017. 6. 27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 한다)을 매수하여 2017. 7. 21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. 1. 23. (주)H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, 2023. 9. 11. 신탁재산의 귀속을 이유로 다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D은 2023. 9. 21. 망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예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가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였다.

라. B의 사망 및 소송수계

1) B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하여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4. 7. 13. 직계존·비속 없이 사망하였고, 배우자인 피고가 B을 단독 상속하였다. 피고는 2024. 9. 26. 인천가정법원 2024느단158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4. 10. 17.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.

2) 피고는 2024. 10. 25.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망 B의 소송을 수계하였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3, 4호증, 을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).

나. 손해행위 및 손해의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망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행위가 되고 D의 손해의사도 인정된다. 또한 수익자인 망 B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다. 손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D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김수영

별지